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130 발의연월일: 2022. 8. 31.

발 의 자 : 신정훈ㆍ이상헌ㆍ강훈식

김영호 · 이장섭 · 이성만

이학영 · 윤재갑 · 김승남

신영대 • 이원택 • 한병도

최인호 · 최혜영 · 박성준

윤준병 • 고용진 • 서영교

서삼석 · 홍익표 · 이용빈

김두관 • 박완주 • 이탄희

서동용 · 정일영 · 박상혁

김원이 · 최기상 · 김회재

유정주 · 김영주 · 어기구

소병철 · 이정문 · 홍정민

주철현 • 윤영덕 • 홍기원

김주영ㆍ허 영ㆍ김진표

김한규·조승래·김경만

김용민 · 고민정 · 한정애

강민정 · 강준현 · 조오섭

김수흥・송재호・이수진(비)

윤건영 · 송갑석 · 김한정

황운하 • 이개호 • 허종식

위성곤 · 이재명 의원

(6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월 15일,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무려 20.6%가 하락하는 등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의 예산 투입에도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기때문임.

또한 보다 근본적 대안으로써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만큼, 문재인 정부 당시 쌀값 정상화와 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된 바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6조, 제1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식량안보와"로 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쌀값 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이상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다만, 미곡은 시장가격으로 수확기에 매입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3(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 곡 외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및 벼 이외의 작물(이하 "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미곡 외의 식량자급 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 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조(목적) -----

정

아

개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생 략)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수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다만,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미곡을 매입할 때 연속된 공급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하여 농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 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 매입 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 매에 필요한 사항과 생산자단 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 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단서 신설>

⑥·⑦ (생 략) <신 설>

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과생
산량 이상을 매입하게 할 수
<u>있다.</u>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
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
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
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
<u>상되는 경우</u>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기
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u>5% 이상 하락한 경우</u>
⑤
<u>다만, 미곡은 시장가격으로</u>
수확기에 매입하여야 한다.

수확기에 매입하여야 한다.⑥・⑦ (현행과 같음)제16조의3(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 적 공급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고 미곡 외의 식량자 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및 벼 이외의 작물(이하 "타작물" 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 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을 수 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수급안정 및 미곡 외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대상,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